사기

	텔레 마케팅	집 수리	자선 단체들	건강 관리	경품 응모 / 복권 당첨
이런 경우를 피하세요	• 당신이 모르는 사람에게서 청하지 않은 전화를 받는 경우 • 텔레 마케터가 “엄청난 할인” 또는 “무료” 상품을 제안할 때 • 여행 패키지, 손쉽게 부자가 되는 법, 이전에 사기 당한 돈 회수해주기, 또는 장거리전화 회사 변경을 제안할 때 • 텔레 마케터가 그들의 회사나 제안에 대해 조사해볼 틈도 주지않고 빨리 결정한 후 돈을 보내달라고 재촉할 때	• 지역연고 없는 영업사원이 집집마다 찾아 다니며 시장가격보다 훨씬 싸게 집수리를 해주겠다고 제안할 때 • 전화 연락처밖에 없거나 또는 사서함번호밖에 없는 주소를 가진 회사로부터 집수리를 해준다는 요청을 받을 때 • 영업사원이나 계약업자가 무료로 당신 집을 점검해주겠다고 제의할 때 • 계약업자가 빈칸이 남아있는 계약서에 당신이 서명하도록 요구 할 때	• 잘 알려지고 평판이 좋은 기관처럼 들리는 엉터리 자선단체로부터 기부 제한을 받을 때 • 돈을 기부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선물을 동봉해서 우송할 때 • 당신의 기부금의 일정량을 수수료로 받게 될 유급기금모금원으로부터 기부 제한을 받을 때 • 생소한 이름의 자선단체 또는 일리노이주 네에는 없는 프로그램으로부터 기부 제한을 받을 때	• 제품이 여러 가지 많은 질병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모두다 치료한다고 선전 판매할 때 • 훌륭한 건강제품처럼 소개되지만 치료 내력이 기록되지 않은 채 광고 될 때 • 제품의 결점을 감추기 위해서 이해하기 힘든 엉터리 의학용어로 선전되어 있을 때 • 집을 떠나 먼 곳에서 치료를 받도록 건강 클리닉에서 요구를 받을 때	• 잡지 판매자나 중간상인이 물건구입시 선물을 준다고 제안할 때 • 선전원이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사는 대가로 비싼 상품이나 사례를 준다고 제안할 때 • 응모하기도 쉽고 제품을 반드시 구입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며 선전원이 전화나 편지로 연락해 올 때
주의사항	• “무료” 선물, 휴가, 또는 상품을 따냈다며 우송 비, 취급 비, 또는 다른 비용을 먼저 지불하라고 할 때 • 제안에 대해 주의 깊게 생각할 기회를 갖기도 전에 당신의 돈 또는 신용카드나 은행구좌번호를 요구하거나, 혹은 수표를 먼저 가져가 버리는 경우 • “고 수익의 위험부담 없는 제의를 놓지 지 마세요”라고 선전할 때	• 계약업자가 수리가 끝나기 전에 현금지불 또는 전액지불을 요청하는 경우 • 계약업자가 회사 고용인이나 회사이름 외의 다른 이름으로 수표를 끊어달라고 요청할 때 • 계약업자가 연고자 또는 보험증명에 관한 정보 알려주기를 거부할 때 • 계약업자가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싼 가격으로 할인해주겠다고 제안할 때	• 소속된 자선단체에 관한 기본질문에 답을 못하거나 하지않으려 할 때 • 기부금을 얻어내려고 억지로 강요할 때 • 수표보다는 현금으로 지불하기를 강요할 때 • 당신에게 기부금을 우송 시키기보다는 사람을 보내서 직접 받아 가겠다고 우길 때	• 제품이 획기적인 과학발명, 기적적인 치료제품, 고전적 치료제품, 또는 비밀 성분이 포함되었다고 선전될 때 • 제품 판매를 금지시키려는 음모가 있다고 선전자가 주장할 때 • 선불이 요구되어질 때 • 위험부담이 없고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보장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할 때	• 선전원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할 때: “당신이 다음의 천만불 짜리 당첨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 지금 바로 응모 하십시오!” • 제품을 더 많이 살수록 대상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선전할 때 • 경품당첨 응모 후 주문한적도 없는 잡지나 제품에 대한 청구서를 받게 될 때 • 지금 바로 제품을 주문하지않으면 다음 번 응모자 명단에 오르지 못할 것이라고 선전원들이 말할 때
대처방법	• Do not Call Registry 가입을 통해 텔레 마케터로부터의 전화 횟수를 줄이세요. • 웹사이트:www.donotcall.gov또는 전화: 1-888-382-1222 TTY 1-866-290-4236 • 관심이 없는 전화는 끊어버리세요. • 텔레 마케터에게 인쇄된 정보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세요. • 사기 신고 또는 Do Not Call Registry 법 위반 신고, 또는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할 경우 검찰청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에 연락하세요.	• 당신이 먼저 전화하지 않은 이상 계약업자 또는 영업사원에게 문을 열어주지 마세요. • 적어도 3개의 견적 서류를 받으세요. • 계약업자의 배경, 신용보증인, 그리고 이전에 시행한 작업들을 확인해보세요. • 당신이 이해 못 하거나 빈칸이 남겨진 계약서에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 검찰청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에 사기로 고발하세요. • 더 자세한 정보는 검찰청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Better Business Bureau, 또는 지방 상공회의소 에 연락하세요.	• 검찰청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312-814-2595) 으로 전화해서 등록된 단체인지 확인하세요. • 자선단체의 운영기간, 정확한 이름, 지방이나 국내사무실의 주소들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세요. • 자선단체가 모금한 돈의 몇 퍼센트가 복지사업에 쓰이는지, 또 현 재정 보고서를 요청하세요. • 만일 권유자가 의심스러울 경우 돈을 기부하지 말고 검찰청에 고발하세요.	• 물건을 구입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해서 약사, 의사 또는 보건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거나 신용사기 신고를 할 때는 검찰청 건강제품 관리국(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Health Care Bureau)으로 연락하세요. 전화: 877-305-5145 (TTY:800-964-3013) Information on health care fraud taken from the Web site of the FTC at www.ftc.gov.	• 당첨 확률에 관해 상세하게 물어보세요. • 만일 경품 또는 복권 응모에 가입했을 시, 신청기록을 보관하고 어떠한 제품도 강제로 구입하도록 협박하지 못하게 하세요. • 법에 따르면,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시에도 똑같은 당첨 확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 검찰청 소비자 사기 국 (Consumer Fraud Bureau of the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으로 도움을 청하거나, 추가정보를 원할 경우 연락하세요.

일리노이 주 검찰총장 리사 매디간의 메시지

원했던 바와 완전히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사기위해 땀 흘려 번 돈을 모두 낭비하는 것 만큼 화가 나는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회사, 가게 메니저 또는 소비자 서비스 담당에게 직접 연락함으로 문제들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이 통하지 않을 때, 검찰청 소비자 보호국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립니다.

비록 검찰청의 검사들이 개개인의 고소를 모두 맡아 대표할 수는 없지만, 중재 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 소비자들에 의해 제출된 고발 또는 탄원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 속임수 또는 부정한 판매 경쟁 전략들이 한 회사에서 발견될 때, 검찰청은 일리노이 소비자들을 대표해서 그 회사를 대상으로 고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검찰청으로 신고하고 고발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심이가는 사업방법 또는 여러 종류의 사기극을 검찰청에서 빨리 알면 알수록, 소비자들이 환불을 받기도 전에 다른 주로 야간도주 하거나 문을 닫아버리는 사업체들을 막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만일 당신이 소비자 사기의 피해자라고 생각되면, 본 브로슈어에 적힌 소비자 핫라인으로 즉시 연락 주십시오. 함께 일함으로 우리 자신들을 소비자 사기극으로부터 막을 수 있습니다.

Lisa Madigan

리사 매디간
일리노이주 검찰청장

소비자 고발서 작성법

소비자 고발서를 작성할 때에는 고발자의 주소, 전화번호, 직장 주소 및 전화번호 등 고발서에 요구된 모든 정보들을 기입한 후 제출 합니다. 또한 고발에 관련된 모든 첨부 서류들의 복사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첨부한 모든 자료들은 검사, 수사원 그리고 다른 검찰청 직원에 의해 사용될 것입니다.

적당한 상황이라면, 고발서의 복사본은 고발을 당한 개인 또는 회사로 보내집니다. 또한 이 정보는 소비자 보호법 또는 다른 법들을 이수하는데 책임이 있는 여러 정부 집행 단체에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고발서는 공문 서류임으로 정보 공개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의 지배를 받습니다. 만일 검찰청에서 당신의 고발서의 복사본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접수했을 때 고발서의 복사본을 의뢰인에게 제출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고발자의 신상정보가 누락되는 정보는 개시되지 않을 것이며 복사본으로부터 지워져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의뢰인은 당신의 개인정보는 모르는 상황에서 고발 내용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고발서는 다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ag.state.il.us. 또는 본 브로슈어의 뒷면에 나와있는 소비자 사기 핫라인으로 전화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고발서와 관련된 첨부 서류들을 다음의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Office of Illinois Attorney General
Lisa Madigan
Consumer Fraud Bureau
500 W. Second St, Springfield, IL 62706
또는
100 W. Randolph St., Chicago, IL 60601

리사 매디간
일리노이 주 검찰청장

소비자 사기 핫라인

시카고
100 West Randolph Street
Chicago, Illinois 60601
1-800-386-5438
TTY: 1-800-964-3013

스프링필드
500 South Second Street
Springfield, Illinois 62706
1-800-243-0618
TTY: 1-877-844-5461

카본데일
1001 East Main Street
Carbondale, Illinois 62901
1-800-243-0607
TTY: 1-877-675-9339

연장자 사기 핫라인
1-800-243-5377
TTY: 1-800-964-3013

건강 관리국
1-877-305-5145
TTY: 1-800-964-3013

www.IllinoisAttorneyGeneral.gov

Printed by authority of the State of Illinois. 12/04.15M.0779
This material is available in alternate format upon request.

사기 방지를 위한 소비자 정보

KOREAN

LISA MADIGAN
ILLINOIS ATTORNEY GENERAL